

#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무엇이 다른가요?

## 지원기준

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고,  
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
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도별·항목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.  
(통상 기준 중위소득 50%~80% 이하)

💡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,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

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보다 더 엄격하게 선정합니다.

따라서 교육급여 산정 방식으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%를 초과하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,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### '기준 중위소득'이란?

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



### '소득인정액'이란?

가구원(학생본인, 부모, 형제, 자매 등)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

소득  
인정액

$$= \text{소득평가액}^{(1)} + \text{재산의 소득환산액}^{(2)}$$

(1) 가구의 근로, 사업, 재산, 연금소득 등을 월기준으로 환산

(2) (각종재산\*-기본공제액-부채) × 월 소득환산율

\* 재산 : 토지, 주택, 전월세보증금, 예금, 주식, 보험, 자동차 등

# 지원대상

## 교육급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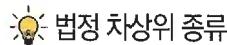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

(단위: 원)

구분	가구규모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기준 중위소득		2,392,013	3,932,658	5,025,353	6,097,773	7,108,192	8,064,805	8,988,428
교육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50%)		1,196,007	1,966,329	2,512,677	3,048,887	3,554,096	4,032,403	4,494,214

## 교육비 지원

- 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- ② 「한부모 가족 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
- ③ 법정 차상위 대상자



법정 차상위 종류

구 분	내 용
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
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	「국민건강 보험법」 시행령에 따라 본인부담을 경감받는 자
차상위 장애(아동) 수당 대상자	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라 장애(아동) 수당을 받는 자
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	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

- ④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“시도별 지원 기준”에 해당하는 경우
- ⑤ 학교장 추천 :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선정

# 신청절차 및 지원내용

## 신청절차

신청접수



읍·면·동 주민센터 or 온라인

소득재산조사



시·군·구

지원 대상 결정



학교

## 지원내용

### 💡 교육급여

구분	교육활동지원비	교과서 대금	입학금 및 수업료
초등학생	487,000원	-	-
중학생	679,000원	-	-
고등학생	768,000원	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	입학금·수업료
지원 횟수	연 1회 (바우처로 지급*)	연 1회 (학교로 지급)	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

\*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(카드포인트 등)로 지급되며, 교과서대금, 입학금·수업료는 납부면제(학교로 지급,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시)

### 💡 교육비 지원

구분	고교 학비	급식비	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	교육정보화 지원	
				PC	인터넷 (유해차단비 포함)
초등학생	-				
중학생	-				
고등학생	입학금·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* (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)	학기 중 중식비 전액 (무상급식 학교 제외)	연 60만원 내외 지원	가구별 컴퓨터 1대	가구별 1회선
지원 방식	학교 납부액 감면			직접 설치	요금 대납

\* 교육급여로 입학금/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

### 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따뜻한 밤상 학생 생일축하·명절맞이 지원금 지급

- 대상 : 도내 초·중·고·특수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교육급여 수급 학생
- 내용 : 학생 1인당 각 4만원 연 3회, 총 12만원 지급 ~ 생일 1회, 명절(설, 추석) 2회
- 방법 : 현금지급(교육급여 수급 계좌 입금) ※별도 신청 없음

#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절차

**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 
교육비 원클릭(oneclick.neis.go.kr) 접속**

 준비사항 : 공동인증서, 가구원의 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), 전월세계약서 등 제출서류 스캔 또는 촬영파일

